

1. 개정이유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24.5.29 제정, 이하 ‘가상자산 제한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가상자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얻어 예외적으로 업무담당자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를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규정 정비 (안 제12조의2 제1항)

- 가상자산 거래 등에 이용해서 안되는 직무상 정보를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외부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로 명확화

나. 가상자산 보유 신고 의무자, 신고 시점 등 구체화 (안 제12조의2 제3항)

- 신고의무자*와 신고 시점**을 구체화하고, 신고 관리 책임자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명확히 규정

*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제한 지침」 [별표1]의 가상자산 제한부서 소속 공무원

** 보유한 날 또는 보유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다. 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구체화 (안 제12조의2 제4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각 요구·직무 재배치 등으로 조치사항 구체화

라. 가상자산 거래 제한의 예외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3)

- 가상자산 관련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행동강령 책임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 가능

- 분기별 거래내역의 보고 및 필요 사유 종료시 매각 의무 부여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된 정보를”을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 [별표1]에서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로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소속하였던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한 날 또는 보유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제4항 중 “따라 위원장은 해당 공무원의”를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여”로, “직무 배제 등”을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가상자산 거래 등 제한의 예외) ①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승인을 받은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6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내역 신고서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지급)	
	생년 월일			연락처		

신고사항

가상 자산 거래 명세	투자 중개 업자	계좌번호	거래내용					매매 금액
			일자	구분 (매수, 매도)	종목명	수량	단가	
분기말 기준 보유내역					종목명	수량	단가	보유 총액

※ 본인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도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의3 제2항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확인부서장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기타 계좌 거래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생략)</p> <p>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정보를 말한다.</p> <p>1. ~ 4. (생략)</p> <p>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또는 직무를 수행하였던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수행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은 해당</p>	<p>제12조의2(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된 정보로서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되기 전의 정보를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65378;금융위원회 공무원의 가상자산 보유 제한에 관한 지침&#65379; [별표1]에서 ‘가상자산 보유 제한 부서’로 지정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소속하였던 공무원(최근 6개월 이내에 소속된 경우에 한함)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보유한 날 또는 보유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④ ----- 따른 신고를 받은 행</p>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배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동강령책임관은 해당 공무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여 --- 다음 각 호-----.

1. 1개월 이내 가상자산의 자진 매각 요구
2. 1개월 이내 직무 변경 또는 직무 재배치, 전보
3. 그 밖에 기관장이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2조의3(가상자산 거래 등 제한의 예외) ① 제12조의2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일정기간을 정하여 가상자산의 보유 및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를 한 경우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른 거래내역을 행

동강령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유 및 거래승인을 받은 가상 자산을 전부 매각하여야 한다.